

승강기 노후 부품교체 업체 선정공고

1. 단지 개요

- 1) 소 재 지 :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서1로 146
- 2) 단 지 명 : 마곡 엠밸리2단지 아파트
- 3) 승강기 기종 및 대수 : 한진엘리베이터(MJMRL, 15인승) - 17대

2. 공사범위 : 승강기 검사 지적사항 부품교체(현장설명회시 배포)

3. 참가자격

- 1) 국토부고시 제2016-943호 사업자선정지침 제26조①항(참가자격의제한)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
- 2) 자본금 5억 이상인 업체
- 3) 공고일 현재 유지관리 1000대 이상 직영관리 및 최근 3년간 1,000만원이상 공사실적 5건 이상인 업체
- 4) 현장 설명회에 참석한 업체

4. 제출서류

- 1) 회사 소개서 및 관리계획서 각1부.
- 2) 보수업등록증,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.
- 3) 법인 등기구 등본 1부.
- 4) 법인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각1부
- 5) 국세,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
- 6)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각 1부.
- 7)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1부.
- 8) 하도급 금지각서(각사양식) 1부.
- 9) 밀봉 견적서(부가세별도) 1부.
- 10) 입찰보증금(입찰금액의5% 현금또는 보증증권)
- 11) 적격심사제 표준 평가를 위한 제반서류(국토부고시 제2016-636호 별표6)

5. 입찰일정 및 선정방법

- 1) 현장 설명회: 2019년 9 월 4 일 14:00시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
- 2) 입찰서류 접수마감일: 2019년 9 월 9 일 18:00시 도착 분,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
- 3) 개찰 예정일 및 장소: 2019년 9 월 9 일 19:00시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
- 4) 선정방법:국토부고시 제2016-943호 사업자선정지침 별표6에 의한 적격심사제로 업체선정 함.

6. 기타

- 1) 제출된 서류에 허의 또는 하자가 있을시 계약 후라도 이를 무효로 함.
- 2) 승강기관련법률 제11조5항에의거 하도급(공동수급)을 주거나 받는 업체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음.
- 3) 상기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부고시 제2016-943호에 따르며,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.
- 4) 자세한 사항은 (☎ 02-2666-9280)로 문의 바람.

2019년 8 월 30 일

마곡엠밸리2단지 입주자대표회



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

평가항목		배점	평가항목			제출서류	점수 부여방식
			평가내용	세부 배점	세부 평가내용		
관 리 능 력	기업 신뢰 도	30점	신용평가 등급	15		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(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 에 평가한 것으로서, 유효기간 이내의 것)	비고2
			행정처분건수	15	0건	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(위탁발급 포함)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	
				10	1~2건		
	5	3건이상					
	업 무 수행 능력	30점	기술자 보유	10	20인이상	기술인력 보유증명서(20인이상 1등)	
				8	15인~		
				5	15인이하		
		장비 보유	10	법정장비보 유시(1등)	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현황(법에 정한 기 본장비 보유시 1등)		
			8	1~2누락			
			6	3개이상			
		업무실적	10	10건이상	최근3년 공사실적(1,000만원이상 10건 1등)		
			8	8~10건			
			6	5건이상			
	사업 제안	10점	사업계획의 적합성	5	우수(20%)	사업제안서	
				2	보통(60%)		
				1	미흡(20%)		
			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	5	우수(20%)		
				2	보통(60%)		
1				미흡(20%)			
입찰가격	30점	입찰가격	30	낮은순(1등)	입찰서	낮은순	
			28	2등			
			26	3등			
			24	4등			
			22	5등이하			
합계		100점	-	100		-	

<비고>

1.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단지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배점 합계는 100점, 입찰가격 배점은 30점으로 한다.
2. 기업신용평가등급은 『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』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,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.

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	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	③ 기업신용평가등급	배점
AAA		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	15.0
AA+, AA°, AA-	A1	①의 AA+, AA°, AA-에 준하는 등급	15.0
A+, A°, A-	A2+, A2°, A2-	①의 A+, A°, A-에 준하는 등급	15.0
BBB+, BBB°, BBB-	A3+, A3°, A3-	①의 BBB+, BBB°, BBB-에 준하는 등급	15.0
BB+, BB°, BB-	B+	①의 BB+, BB° 에 준하는 등급	15.0
BB-	B°	①의 BB-에 준하는 등급	14.5
B+, B°, B-	B-	①의 B+, B°, B-에 준하는 등급	14.0
CCC+ 이하	C 이하	①의 CCC+에 준하는 등급 이하	11.0

3.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,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.
4. 기술자·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.
 - 가.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 『국가기술자격법』상의 자격취득자, 『건설기술진흥법』상의 건설기술자, 『정보통신공사법』 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서,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,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. 그 밖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.

국가기술자격자	기능사	산업기사	기사	기능장	기술사, 건축사
학·경력 기술자	승강기자격검사자	초급	중급	고급	특급
산정기준	1인	1.25인	1.5인	1.75인	2인

- 나.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,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(고용보험, 국민건강보험, 국민연금,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)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.
5. 업무실적은 10건을 상한으로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만점 기준을 정할 수 있다.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구역 등의 구역이행실적 증명서,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, 세금계산서,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,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(법인 또는 개인)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 6.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,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 시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내용 등을 평가한다.
 7.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,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.